

# 2026학년도 차 의과학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시행계획(안)



**차 의과학대학교**  
**CHA UNIVERSITY**

※ 본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 결과 등의 사유로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서 접수 전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admission.cha.ac.kr>)에서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 전형별 모집인원

구분	모집단위	모집인원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자연	간호대학	4명	0명
	약학대학	3명	X
인문	미래융합대학	3명	0명

※ 대학 구조개혁 및 학부(과) 개편에 따라 모집단위는 변경될 수 있음

※ 전 교육과정 이수자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모집단위별 수용 범위 내에서 지원자의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약간명씩 별도 선발함

※ 간호대학의 경우 「교원양성기관 정원 운영 지침」에 따라 선발인원의 제한을 둘 수 있음

## II. 전형일정

구분	일정
원서접수기간	2025. 7. 7.(월) ~ 11.(금) 또는 2025. 9. 8.(월) ~ 12.(금)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2025. 7. 12.(토) ~ 12. 11.(목) (153일) 중 지정일 (추후공지)
합격자 발표	2025. 12. 12.(금)까지
등록기간	2025. 12. 15.(월) ~ 17.(수) (3일)
미등록 충원 합격통보 마감	2025. 12. 23.(화)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2025. 12. 24.(수) 22시까지

### Ⅲ. 지원자격기준

#### 1. 지원자격

가.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자격 구분	법령구분	지원자격
재외국민과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와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의 자녀 ※ 학생 및 부모 모두가 아래의 '2.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중 '가. 재외국민과 외국인(2% 이내)'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자격 구분과 관련 없이, 국외 근무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전 교육과정 이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재외국민과 외국인, 「국적법」제6조제2항(결혼이주민)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지원자격 인정 가능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지원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음

#### 2.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가. 재외국민과 외국인(2% 이내)(「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 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분	내용
국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

- 1)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2) 국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 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3) 국외재학기간

- ①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②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4) 국외체류일수 조건

- ①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②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 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③ 체류일정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나. 전 교육과정 이수자(「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7호)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며, 방학·국외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함

- 1)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2)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하며,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다.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6호)

- 1)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인으로 인정

- 우리나라 복수국적자의 경우 지원 불가

## IV. 전형방법

### 1.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모집단위	선발모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총점
		서류평가	면접평가	
간호대학	일괄합산	30(30%)	70(70%)	100(100%)
약학대학				
미래융합대학				

※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반영함

: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시, '공동체역량' 또는 '인성' 영역에서 1~7호는 정성평가로 반영하고, 8~9호는 0점을 부여함

※ 국내 고등학교 재학 사실 등으로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고 출신자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동일 적용함. 단, 국내 고등학교 재학 사실이 없는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음

### 2. 수능최저학력기준

구분		수능최저학력기준
간호대학, 미래융합대학		미적용
약학대학	재외국민과 외국인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7 (수학 필수반영)

### 3. 평가 안내

#### 가. 서류평가

- ① 평가방법: 지원자 1인당 2명 이상의 평가위원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종합평가
- ② 평가내용: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등

#### 나. 면접평가

- ① 평가방법: 지원자 1인당 2명 이상의 평가위원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확인 및 일반면접
  - ② 평가내용: 진로역량, 인성, 발전가능성, 한국어 능력 등
- ※ 약학대학의 경우, 약학 인재로서 가치관, 인성,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면접을 추가할 수 있음

#### 다. 기타사항

- 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선발
- ②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
- ③ 면접 결시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④ 해당 모집단위의 지원자 수가 모집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원자의 대학수학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⑤ 최종 합격 인원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 V. 제출서류

### 1.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지원자격	제출서류
<p>재외국민과 외국인</p> <p>(「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li> <li>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li> <li>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li> <li>가족관계증명서(학생)</li> <li>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li> <li>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모, 학생)</li> <li>여권 사본(부모, 학생)</li> <li>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 학생)</li> <li>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국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li> <li>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li> <li>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li> <li>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li> <li>활동 목록표 및 증빙자료(본교 양식, 희망자에 한함)</li> <li>교육과정 기록표 및 외국학교 현황표(본교 양식)</li> <li>학력조회 동의서(본교 양식)</li> </ul>
<p>전 교육과정 이수자</p> <p>(「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li> <li>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li> <li>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li> <li>출입국사실증명서</li> <li>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li> <li>신분증 사본</li> <li>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li> <li>활동 목록표 및 증빙자료(본교 양식, 희망자에 한함)</li> <li>교육과정 기록표 및 외국학교 현황표(본교 양식)</li> <li>학력조회 동의서(본교 양식)</li> </ul>
<p>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p> <p>(「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li> <li>고등학교 성적증명서</li> <li>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증명서</li> <li>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li> <li>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li> <li>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li> <li>활동 목록표 및 증빙자료(본교 양식, 희망자에 한함)</li> <li>교육과정 기록표 및 외국학교 현황표(본교 양식)</li> <li>학력조회 동의서(본교 양식)</li> </ul>

※ 일부 제출서류에 대하여 대체서류를 인정할 수 있음

※ 제출서류 확인 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2. 제출서류 유의사항

가. 국내 발급서류: 국내 발급 공문서는 원본 제출이 원칙(단,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지참하여 본교 입학홍보처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함)

나. 해외 발급서류: 해외 발급서류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받은 번역본 제출(단, 재외한국학교 발급서류는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유효함)

※ 한국어, 영어로 발급된 서류를 제외한 해외 발급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번역공증\*만 받은 서류는 제출 불가)

\* 번역공증: 번역문서의 진실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가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진술 및 확약하고 공증하는 절차